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신청 시스템 사용 매뉴얼

2021. 3.

자산관리처 자과캠관리팀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의 시행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건강검진)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임시건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 1. 문진과 진찰
 -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 4. 흉부방사선 촬영
 -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 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의 개요

- ●수검대상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중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자(대학원생, 연구원, 직원 및 교수)
 -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 지 않을 수 있음
- 검진시기 및 대상(2021학년도 기준)
 - 1학기 검진: 매년 4월 또는 5월, 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전원
 - 1학기 검진: 매년 10월 또는 10월, 검진주기가 6개월이하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모든 건강검진에는 신규연구활동사자가 포함 됨.
- 건강검진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 신청대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연구원, 직원 및 교원)
 - ❖직원 및 교수: 유해인자를 직접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 ❖연구실에 소속된 학부과정 연구생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됨
 -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됨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임시작업, 단시간 작업이라도 신청대상임)
 - 신 청 처: 안전정보망(http://safety.skku.edu) > 연구실관리 > 특수건강검진

(1명이 해당실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

(참고)임시작업, 단시간 작업의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 ✓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
 -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말한다.
 -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o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진행 **PROCESS**

이상자에 대한 재검 실시 (개별통지)

















온라인 신청

- 연구실별 진행
- 온라인 신청
- 유해인자 및 사용 량/빈도 입력

신청내용 검토

- 온라인 신청 결과 확인
- 단과대학/전공별 재확인 진행

소요비용 산출

- 신청자 개인별 소 요비용 산출
- 수기산출로 최초 견적 산출까지 약 1개월 소요
- 산출된 소요비용 을 관리팀에서 재 검토 및 검진기관 과 협의/조정

검진실시

- (검진전)검진실시 안내 공지 및 검 진희망 일자신청
- (검진당일)기초조 사서 작성 및 유 해 인자별 검진실 시
- 출장검진 미수검 자는 검진기관에 개별 방문하여 수

결과분석

- 검진내용의 결과 분석
- 이상자(유소견자) 별도 분류 및 재 검 실시(검진기관 개별 방문)

결과통보

• 개인별 검진결과 서 확인(개인이메 일)

건강검진 신청 전 필요사항

- 연구실 온라인 정보 업데이트
- 화학물질 및 고압가스 현황자료 업데이트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01_안전정보망 접속

● 홈페이지 주소: http://safety.skku.edu



"로그인" 클릭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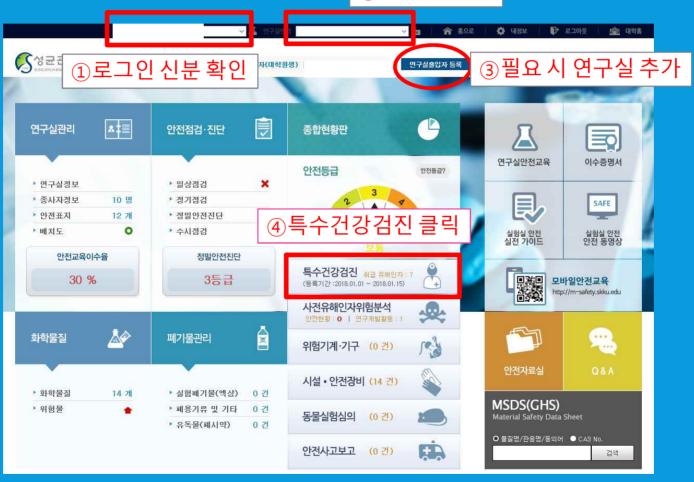


학부생/대학원생/교수/직원 → 학교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02_건강검진 메뉴(특수건강검진)

로그인 > (자동으로) 연구실 관리페이지로 전환

②연구실 확인



03_건강검진 신청(1)

"건강검진 메뉴 (화면 자동전환) > 특수건강검진 > 해당 년도/신청기간 선택 > 등록" 클릭





해당되는 대상자 선택



<대상자 선택 시 주의> 직원 및 교수: 유해인자를 직접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대학원생 등이 임의 판단하지 말고, 해당자에게 물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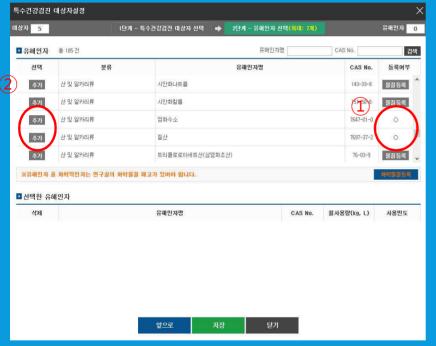


< 참 고 >

- 화학적 유해인자는 화학물질이 온라인으로 해당 연구실에 등록된 이후에 선택가능
- 등록여부에서 "O"는 등록된 화학물질, "물질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임
- 미등록 물질의 등록방법
 - ① "물질등록"을 클릭하여 물질별 등록
 - ② "화학물질등록"을 클릭하여 대량 등록

03_건강검진 신청(2)

건강검진을 진행할 화학물질/유해인자를 선택 [등록여부가 O인 유해인자 > 추가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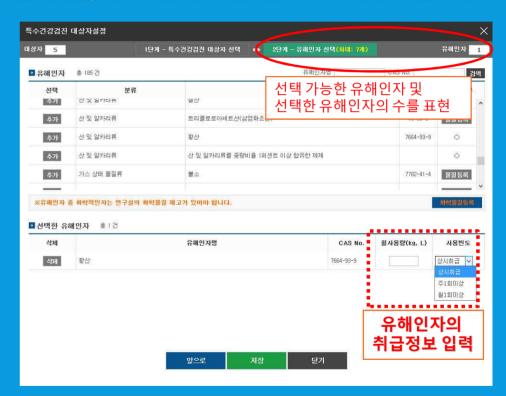






선택한 유해인자의 취급정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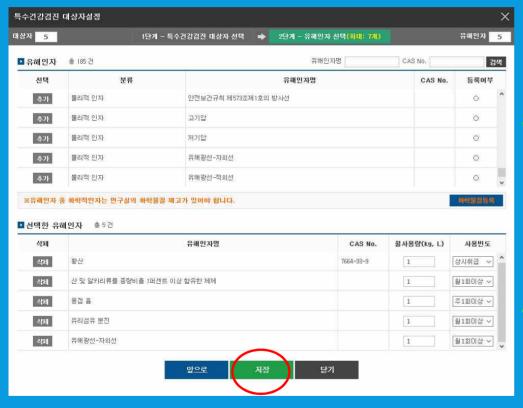
[월사용량(kg 또는 리터), 사용빈도(상시취급/주1회이상/월1회이상 중 선택]



선택 가능한 유해인자의 최대 수: 5개 - 5개를 초과하는 유해인자를 취급할 경우 별도 문의(안전정보망 > Q&A 활용)

03_건강검진 신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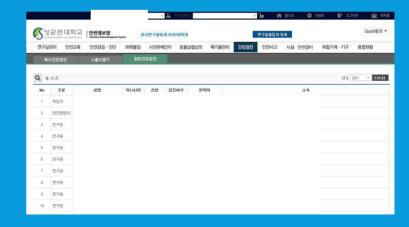
유해인자 등록 완료 후 저장 클릭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자동생성)[신청완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자동생성)[신청완료]





문 의

안전정보망(<u>http://safety.skku.edu</u>) > Q&A